

#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시행

김정환 |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장

(前)환경부 인사팀장, 기후대기정책과 서기관,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tel. 02-3679-5071 | ecolover@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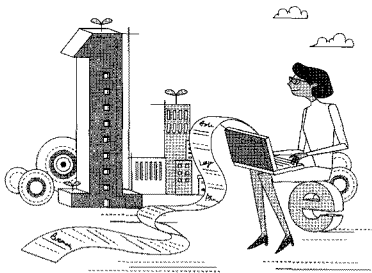
## 목표관리제의 시행 배경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도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 또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관리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한 후 그 이행을 관리하는 것이다.

2010년 4월 14일부터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기후변화 · 에너지 · 자원 문제의 해결과 이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충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실행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수립 · 이행, 자동차 온실가스 · 연비 규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감축을 유인하는 제도가 바로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이하 “목표관리제”)」이다.

## 목표관리제의 정의 및 운영체계

목표관리제를 간단히 정의한다면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 또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관리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한 후 그 이행을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도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에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준 · 절차와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부문별 관장기관의 사무에 대한 점검 · 평가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문별로 관장기관을 맡는 농림수산식품부(농업 · 축산 분야), 지식경제부(산업 · 발전 분야), 환경부(폐기물 분야), 국토해양부(건물 · 교통 분야)가 직접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목표의 설정과 그 이행을 관리하게 된다.



## 목표관리 운영지침의 제정경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표관리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는 목표관리제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운영지침 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무엇보다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고 국제적 수준의 업체별 산정 · 보고 · 검증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와 함께

이 제도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를 위해 2차례에 걸친 공청회 이외에도 지역별 순회설명회, 20개 업종별 정책간담회 등을 열어 제도의 현장 수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관리업체의 지정결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0-109호)」에 따라 지난 9월 말에 470개의 관리업체를 지정·고시하였으며,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468개의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였다. 관리업체의 지정 기준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체와 사업장별로 그 기준을 달리 하고 있으며, 향후 단계별로 강화될 예정이다.

〈 표-1 〉 관리업체 지정기준

구분	2011. 12. 31까지		2012. 1. 1부터		2014. 1. 1부터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CO <sub>2</sub> eq ton)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 소비량(terajoules)	500	100	350	90	200	80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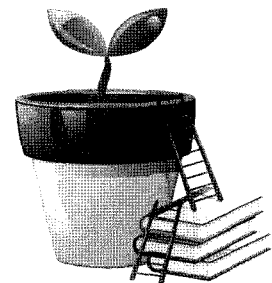
468개 관리업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442백만 CO<sub>2</sub>톤이며,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은 5,586천 TJ이다. 전력의 생산 및 사용에 따른 중복산정량을 제외하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1%, 에너지 소비량의 약 4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발전 부문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온실가스 多배출 업종은 ① 발전·에너지(47.9%), ② 철강(13.3%), ③ 석유화학(9.6%), ④ 시멘트(9.3%), ⑤ 정유(5.9%)의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2 〉 부문별 관리업체 지정결과

[단위: 개수, 천CO<sub>2</sub>톤, TJ]

구분	관리업체 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개수	비율(%)	천CO <sub>2</sub> 톤	비율(%)	TJ	비율(%)
농업·축산	27	5.8	2,238	0.5	36,312	0.7
산업	338	72.2	239,542	54.2	3,160,090	56.6
발전	34	7.3	186,372	42.2	2,260,012	40.5
폐기물	23	4.9	7,578	1.7	33,858	0.6
건물·교통	46	9.8	6,397	1.4	96,217	1.7
합계	468	100.0	442,127	100.0	5,586,490	100.0

금년 상반기에 작성 제출하게 되는 목표관리제 명세서는 향후 목표의 설정은 물론 행정처분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에 해당업체는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인력의 확보와 관리시스템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 목표관리 운영지침의 주요내용

목표관리 운영지침은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리업체의 지정절차는 물론, 감축목표의 설정,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보고·검증(MRV) 방법과 조기행동의 인정, 검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관리업체의 지정**

〈표-1〉의 지정기준에 따라 관리업체를 지정하는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관리업체의 조직경계에는 업체가 소유·운영하는 생산시설 외에도 건물, 차량, 폐기물 처리시설 등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그리고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3천 CO<sub>2</sub>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업체 배출량의 5% 범위 내(상한선 25천 CO<sub>2</sub>톤)에서 일부 보고의무 등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한편,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대한 조정절차도 함께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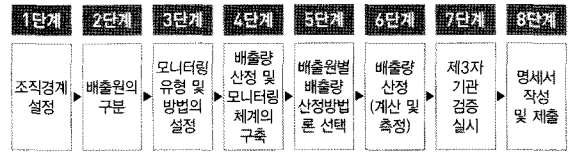
**감축목표의 설정**

국가 감축목표를 토대로 산정된 업종별 목표(배출허용량)의 범위 내에서 개별 관리업체의 감축목표를 협의·설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목표 설정방식을 구체적인 계산식으로 제시하였으며, 개별 업체의 목표는 시설별로 산정한 배출허용량의 합으로 정해지게 된다. 목표 설정단계의 시발점이 되는 기준년도 배출량은 목표 설정 대상연도의 직전 연도를 제외한 최근 3개년의 연평균 배출량이 된다. 목표의 설정방법은 과거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1단계와 일부 시설(또는 업종)에 대하여 벤치마크 기법을 적용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두 단계 모두 기존시설 뿐만 아니라 신·증설 시설에 대한 목표 설정방법도 함께 제시하는 한편, 시설별 가동률의 증감이 반영되도록 하여 기업의 배출전망치(BAU)가 목표를 설정할 때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

목표관리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산정·보고·검증(MRV)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 관리업체의 인벤토리 또는 감축실적이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먼저 관리업체의 산정·보고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그림-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절차



이와 함께 배출활동 또는 시설규모별로 산정등급을 정하고 각 등급에 따른 산정방법론과 명세서 작성서식 등을 함께 볼 수 있다. 산정방법은 계산법 또는 측정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산정결과에 대한 명확도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기 타**

위 내용 이외에도 조기행동 인정, 검증기관 지정, 주요정보의 공개, 메타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감축한 노력을 보상하기 위하여 조기감축실적의 대상유형, 인정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관리업체가 조직경계 밖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고 그 실적을 해당 관리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상쇄에 대한 근거규정도 함께 제시하였다. 관리업체가 작성한 명세서 등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수행하게 되는 검증기관의 요구조건, 지정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검증기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행정적인 절차에 해당되는 이행계획·실적의 확인, 주요정보의 공개, 관장기관 소관사무 점검·평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목표관리제의 본격 시행**

2011년은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라 할 수 있다. 제도의 대상이 되는 관리업체는 무엇보다도 상반기 중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금번에 작성·제출하게 되는 명세서는 향후 목표의 설정은 물론 행정처분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관리업체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담인력의 확보와 관리시스템을 확충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